

경운대학교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송선학원 정관」 제31조의7과 「대학평의회규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방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단위의 위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정원 : 4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위원 정원 : 3인

② 대학평위원회의 의장은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에 대한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평의회 심의를 거쳐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천한다.

③ 대학평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 본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2. 직원 : 본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직원

제4조(의장 등의 직무) ①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임기)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위원회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법인의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요구 안건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회의) ① 추천위원회 회의는 총장 또는 의장이 요청하거나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목적, 회의일시, 회의장소 등의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한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개방이사의 경우 학교법인 「송선학원 정관」 제20조의2에 따라 도덕정신 함양을 바탕으로 하는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 후보자는 법인 「정관」 제20조의 2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인사로서 「사립학교법」 제22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하며, 법령 및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임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감사에 대한 법인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개방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추천 인원은 요청 인원의 1배수로 한다.

제8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9조(회의록)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 안건 및 발언요지
3. 참석자 성명
4.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개최 후,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사항
3. 당해 추천위원회에서 비공개 정보로 인정되어 의결한 사항

제10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이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

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간사) 추천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육지원처에서 관장한다

제13조(예산)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승선학원정관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